



#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의 증거분리제출 시행방안



2020. 4.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 [목 차]

###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연구검토 결과]

- 1. 사법행정자문회의 주요 논의사항 및 쟁점 ..... 1
- 2.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연구·검토 결과 ..... 1

### [기초발제자료]

#### I. 검토 필요성

- 가. 정식재판청구, 공판회부 사건: 증거분리제출제도 적용 제외 ..... 3
- 나. 관련 절차 변화 ..... 3
- 다. 제도 정비 필요성 ..... 4

#### II. 관련 규정

- 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 ..... 4
- 나. 관련 예규 ..... 4

#### III. 관련 제도에 대한 기초 검토

- 1. 공소장일본주의 및 증거분리제출제도 ..... 5
- 2. 약식절차와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의 접수사무 ..... 6
- 3.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에서의 증거분리제출제도 ..... 7

#### IV. 비교법적 검토

- 1. 미국 ..... 8
- 2. 일본 ..... 9
- 3. 독일 ..... 9

#### V.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의 처리 현황

- 1. 원칙적으로 수사기록 미반환 ..... 10
- 2. 현황 조사 결과 ..... 12
- 3. 접수건수 관련 통계 ..... 17



##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논의경과]

1. 개요 .....	20
2.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에서의 증거분리제출제도 시행 여부 .....	20
3. 제도 시행의 구체적 방안	
가. 수사기록의 반환 .....	24
나. 반환의 주체 및 시기 .....	24
다.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제언 .....	26
4. 관련 예규 개정	
가.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	28
나.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 -1) .....	32
다. 참고 - 추가로 개정이 필요한 관련 자료 .....	34
5. 시행의 시기 및 범위 .....	34



##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의 증거분리제출 시행방안

2020. 4.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연구검토 결과]

#### 1. 사법행정자문회의 주요 논의 사항 및 쟁점

- ▣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에서의 증거분리제출제도 시행 여부
- ▣ 제도 시행의 구체적인 방안
  - 수사기록의 반환: 전체 사건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 반환의 주체 및 시기
  -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보완책
- ▣ 관련 예규 개정
- ▣ 시행의 시기 및 범위
  - 시범 시행 이후 확대 시행

#### 2.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연구검토 결과

1.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에 관하여 증거분리제출제도를 시행하지 아니할 법적인 근거가 없고, 증거분리제출제도를 시행할 현실적인 여건도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에 관하여도 증거분리제출제도를 확대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합니다.
2. 이를 위하여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 전체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 또는 공판회부 결정 이후 10일 이내에 약식계에서 해당 검찰청으로 수사기록을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하여, 고정/고단재판부의 통합운영 또는 고정전담재판부에 대한 배당에서의 고려, 담당 직원들 사이의 적절한 업무 분장 및 인력 보충, 관련 예규의 개정, 검찰과의 업무 협조 등이 필요합니다.
4. 절차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2020년 하반기에 일부 법원을 상대로 시범 실시하고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2021년 정기인사에 맞추어 이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발제자료]**

**II. 검토 필요성**

**가. 정식재판청구, 공판회부 사건: 증거분리제출제도 적용 제외**

- 그동안 정식재판청구 사건은 검찰로 기록을 인계하지 않고 곧바로 담당 재판부로 기록을 송부하여왔음
- 정식재판청구, 공판회부 사건은 경미한 사안의 신속한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약식절차에 대한 불복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2006년도 증거분리제출제도 실시 당시에도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증거분리제출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바, 형사사건 전체에 대하여 공소장일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에서도 증거분리제출제도를 확대 시행할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나. 관련 절차 변화**

**1)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수정**

- 2017. 12. 19.부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벌금액 증액이 가능(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의 개정)

**2)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접수 건수 감소 및 정식재판청구 사건 전담 재판부의 폐지 추세**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수정됨에 따라 고정 사건 접수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이에 따라 고단/고정전담재판부를 통합하여 형사단독 재판부 간 업무량 편차를 해소하고, 전문 재판부(성폭력 등)의 실질화를 꾀하는 추세임
- 재판부 통합에 따라 정식재판청구 사건 등의 절차를 일반 구공판 사건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대두. 실제로도 고정 사건의 증거조사 절차를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진행하는 재판부 증가

### 다. 제도 정비 필요성

#### ▣ 통일적 기준의 마련

-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에서 수사기록의 반환 여부, 반환하는 대상 사건, 반환의 시기 등에 대한 법원별, 재판부별 실무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현황 공유 및 통일적 기준 마련 필요

#### ▣ 원활한 절차 진행

- 현행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해석상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에 대하여만 증거분리제출제도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이론적, 법적 근거가 부족함
- 이에 따라 수사기록 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도 분명하지 아니함
- 약식절차에서는 검사가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 데 필요한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동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에서 증거분리제출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결국 수사기록을 검찰청에 반환하여야 함
- 법원 내부의 업무 분담, 검찰과의 업무 협조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III. 관련 규정

### 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

- 별지로 첨부

### 나. 관련 예규

#### ▣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 공판회부와 관련된 예규를 통합하여 단일 예규로 제정(2003년). 정식재판청구서 등의 양식을 정비하고 접수절차, 배당



절차, 기일통지방식, 기일지정방식, 선고방식 등을 개선하여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효율적 심리를 도모

#### ▣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

- 형사소송기록의 편철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에서의 증거분리제출제도 시행에 따른 기록관리사무의 통일을 기함

## IV. 관련 제도에 대한 기초 검토

### 1. 공소장일본주의 및 증거분리제출제도

#### 1) 공소장일본주의

『형사소송규칙』 제118조(공소장의 첨부서류) ② 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한 서류 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검사가 공소제기 시 공소장에 기재해야 할 사실 이외에 첨부, 인용 및 여사의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
- 법관의 예단배제, 공판중심주의 내지 변론주의, 직접심리주의 보장

#### 2) 증거분리제출제도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3(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  
 ① 법 제311조 내지 제315조 또는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이 수사기록의 일부인 때에는 검사는 이를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사기록의 일부인 서류나 물건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나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증거로 제출할 경우 또는 법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제출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

- 수사기록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증거로 채택된 증거서류만을 분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증거능력 없는 증거서류에 의해 법원의 심증이 형성되는 것



을 방지하는 제도임

● 시행 연혁

- 1989. 6. 7.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현행 제132조의3) 신설
- 2005. 4. 1. 서울남부, 대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시범 실시
- 2006. 3. 29.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 제정
- 2006. 4. 전국 18개 지방법원 시행
- 2006. 10. 전국 지원 단위 확대 실시 (공판회부사건 및 정식재판청구 사건 제외)

## 2. 약식절차와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의 접수사무

### 1) 약식절차

-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를 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
- 약식명령의 청구는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법 제449조), 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 데 필요한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규칙 제170조)

### 2) 정식재판청구

- 약식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재판에 불복이 있는 자가 법정기간 내에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
- 접수와 통지
  - 접수절차: 정식재판청구서 좌측 하단에 접수인을 찍어 새로운 공판사건으로 접수한 다음 접수계에서 사건번호 부여, 배당, 전산입력
  - 기록 조제: 종전 약식사건기록표지와 약식공소장 및 그 이후의 서류를 분



리하여 편철한 후 약식사건기록표지의 약식사건번호 및 해당란에 공판사건번호를 기재하고, 피고인 이름 밑 또는 옆에 ‘정식재판청구’라고 주서

- 기록 송부: 약식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정식재판청구서를 인계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송부서’를 첨부하여 약식기록을 담당재판부의 참여사무관 등에게 송부

● 정식재판 개시

-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

### 3) 공판회부

- 이행 사유: 약식명령 청구된 사건이 약식명령을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법 제450조)

● 이행 절차

- 사실상 공판절차를 진행(예, 공판기일지정, 공소장부분 송달, 피고인 소환 등)하면 되고 특별한 형식상 결정을 할 필요는 없음
- 다만, 실무상으로 ① 재판사무시스템이 출력지원하는 공판회부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고, ② 기록조제는 종전 약식사건기록에서 약식사건기록표지와 약식공소장 및 그 이후의 서류를 분리하여 편철한 후 피고인의 이름 밑 또는 옆에 ‘공판회부’라고 주서하고, ③ 약식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약식사건이 공판절차에 회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송부서’를 첨부하여 약식기록을 공판사건 담당 접수계로 송부하면, ④ 접수계에서는 새로운 공판사건으로 접수하고 다른 공판사건과 함께 사건번호 부여, 배당

## 3.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에서의 증거분리제출제도

▣ 증거분리제출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정식재판청구절차 등은 경미한 사안의 신속한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약식 절차에 대한 불복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2006년도 증거분리제출 제도 시행시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이를 전제로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가 제정됨. 실무상 정식재판청구 등 사건의 기록관리는 수사기록을 검찰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재판부에서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고,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증거를 분리하여 제출받지 않고 있음
-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상 증거분리제출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법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아니함**

## V. 비교법적 검토

### 1. 미국

- 미국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약식명령 청구 및 정식재판 제도는 없음
- 다만 중범죄(Felony)와 경범죄(Misdemeanor)<sup>1)</sup>로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절차를 구분하여 형사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경범죄의 경우 중범죄와는 달리 부판사(Magistrate Judge)에 의한 원칙적 심리, 예비심문(Preliminary Hearing)의 생략, 공소제기 방식의 간소화, 배심 재판의 제외 등과 같은 절차상 특칙을 규정하고 있기는 함
- 그러나 경범죄는 1년의 징역형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통상적인 형사절차가 대부분 그대로 적용되고, 증거제출이나 증거능력 요건과 관련하여 특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님

#### ☞ **경범죄에 대해서도 증거분리제출제도 적용**

1) 경범죄는 Misdemeanor(1년 이하), Petty offense(6월 이하), Infraction(구금 5일 이하) 등으로 세분화됨 (18 U.S.C. 3559)



## 2. 일본

- 일본 형사소송법 제461 내지 제470조는 약식명령(10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를 부과할 사건)을 규정하고 있음
- 피고인이나 검사는 약식명령 고지일부터 14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sup>2)</sup>할 수 있는데, 일본 형사소송법 제468조 제2항은 우리 법과 마찬가지로 “정식재판 청구가 적법할 때는 통상의 규정에 따라 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증거서류 등의 반환] 일본 형사소송규칙 제293조는 “법원이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하거나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경우, 약식명령 당시 제출받은 서류 및 증거물을 모두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sup>3)</sup>”고 규정<sup>4)</sup>

## 3. 독일

- 독일 형사소송절차의 특수성
  - 독일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은 “법원은 진실 규명을 위하여 직권으로 재판에 의미 있는 모든 사실과 증거방법에 관한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함
  - 이는 법관의 진실발견의무와 직권증거조사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독일 형사소송절차는 영·미식의 당사자주의가 아닌 직권주의를 취하고 있음

2) 이때 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서류 및 증거물을 재판소에 제출하여야만 함(일본 형사소송규칙 제289조)

3) 第二百九十三条 裁判所は、第四百六十三条第三項(직권 공판회부 관련)又は第四百六十五条第二項(정식 재판청구 관련)の通知をしたときは、直ちに第二百八十九条の書類及び証拠物を検察官に返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기록제출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패전 후 미군정의 영향으로 공소장일본주의를 도입, 일본 형사소송규칙 제256조 제6항은 “공소장에는 법관에게 사건에 관하여 예단을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여 공소장일본주의를 규정 - 박순영, “공소장일본주의”, 신영철 대법관 퇴임기념 논문집, 556면, 사법발전재단(2015)



- 독일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은 “공소장은 공판절차 개시의 청구를 포함한다. 공소장과 함께 기록을 법원에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실무상 검사는 공소 제기와 동시에 수사서류를 일괄하여 법원에 제출 **☞ 일반 공판절차에서도 증거분리제출제도 적용 없음**

■ 정식재판청구시 당연히 기록 반환하지 않음

- 피고인은 약식명령<sup>5)</sup>에 대해 2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적법한 경우 공판기일을 지정함(제411조 제1항)
- 공소장일본주의 및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운영이 없는 독일 형사소송절차의 특성상 정식재판청구 시 수사기록이 반환되지 않음
- 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리 당사자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공판중심주의 및 그에 따른 증거분리제출제도가 확립되어 있음 **☞ 수사기록 반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독일과 그 전제가 상이함**

## VI.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의 처리 현황

### 1. 원칙적으로 수사기록 미반환

#### 가. 절차의 예시(고정, 고단사건 통합 재판부의 경우)

■ 정식재판청구 사건

- 검찰의 구약식 → 약식명령 → 정식재판청구 → 약식계에서 ‘고정’ 사건번호 부여 및 기록 제조, 분리(수사기록 표지 작성 및 약식기록 첨부) → 형사과 사건 배당 → 재판부로 전체 기록 인계 → 재판부에서 공판기록 표지, 공소장부분 및 정식재판청구서 사본, 수사기록 목록 사본을 공판부에 사회복무요원 사송을 통해 전달 → 검찰 공판부에서 증거목록을 작성 → 검사가 1회 기일에 증거목록 제출(1회 기일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법정에서 증거기록을 공판검사를 통하여 반환)/ 검찰로부터

5) 독일 형사소송법은 제407조 내지 제412조에서 약식명령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증거목록을 송신받지 아니하고 수사기록 목록을 참조하여 재판부에서 증거목록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음

■ 공판절차 회부사건

- 검찰의 구약식 → 공판절차 회부 결정 → 약식계에서 기록 제조 후 재판부로 기록 인계 → 배당 받은 각 재판부에서 기일 전 증거기록을 검찰에 반환 → 이후 일반적인 고단 사건과 같이 절차 진행(증거기록을 검찰에 바로 반환하지 않고 재판부에서 가지고 있다가 1회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반환하는 재판부 일부 있음)

#### 나. 관련 과별 업무 분장

■ 약식계

- 현재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가 있더라도 이미 제출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담당재판부에 송부하고 있음. 기록 송부 이전 열람·등사 신청이 접수될 경우 약식계에서 해당 업무처리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정식재판청구 된 사건기록 조제 및 송부는 약식계 실무관이 담당

■ 재판부

- 약식계로부터 기록 일체를 송부받아 이를 보관, 관리하면서 공판절차 진행. 기록 송부 이후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업무는 재판부에서 처리
- 증거목록 작성 여부
  - 각 재판부 별로 ① 1회 기일 종결의 경우 직접 증거목록을 작성하고, 2회 기일 이후 종결의 경우 검찰에서 증거목록을 전송하여 주는 경우와 ② 모든 사건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증거목록 전송받아 작성하는 경우가 혼재되어 있음
- 불채택 증거 반환 여부



- 수사기록 중 증거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담당 재판부에서 이를 별도로 검찰에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항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이를 일체로 항소심으로 송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재판부에 따라 참여관에게 수사기록 중 불채택 증거 포함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 뒤 공판검사를 통하여 반환하는 예가 있음

## 2. 현황 조사 결과

### 가. 조사 대상 및 기간

- 전국 지방법원(18개) 및 경인지역 지원(7개, 고양, 부천,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을 대상으로 ① 2019. 7. 29. ~ 8. 9., ② 2019. 9. 5. ~ 9. 17. 조사한 결과

### 나. 고단/고정전담재판부 통합 여부

- 통합(21개):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고양지원, 부천지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춘천지법, 대전지법, 청주지법, 대구지법, 부산지법, 창원지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 분리(4개): 서울동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울산지법

### 다.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경우

#### ▣ 수사기록 반환 여부 및 대상

- 모든 사건 반환: 서울중앙지법 중 12개 재판부, 서울서부지법 중 1개 재판부, 대구지법
- 부인 사건 반환: 서울중앙지법(4개 재판부, 1개 재판부는 검찰에서 요청한 사건만), 서울서부지법 중 5개 재판부



- 미반환: 서울중앙지법 중 8개 재판부, 서울서부지법 중 5개 재판부,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인천지법, 부천지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춘천지법, 대전지법, 청주지법, 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 서울중앙지법 일부(17개 재판부), 서울서부지법 일부(6개 재판부), 대구지법만이 반환하고 있음. 다수의 법원은 반환하고 있지 않음

#### ▣ 반환 주체: 재판부

- 기록을 검찰에 반환하는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대구지법의 경우 반환 업무는 모두 약식계가 아닌 재판부에서 맡고 있음

#### ▣ 반환 시기

- 정식재판청구서 접수, 재판부 기록 인수 후: 서울중앙지법(18단독), 서울서부지법(9단독), 서울중앙지법 1단독
- 제1회 공판기일 전: 서울중앙지법 중 11개 재판부, 대구지법(전체)
- 제1회 공판기일에서 부인 시: 서울중앙지법 중 4개 재판부, 서울서부지법 중 5개 재판부

#### ▣ 반환 방법

- 기록반환확인서 수령: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2개 재판부
- 기록반환철 장부에 사인: 대구지법
- 기타: 서울서부지법 중 4개 재판부

#### ▣ 증거목록 작성 주체

- 검찰로부터 증거목록 전송받아 작성
- 서울중앙 11단독의 경우에만 미반환사건은 재판부에서, 반환사건은 검찰로부터 전송받아 작성



## 라. 공판회부 사건의 경우

### ▣ 수사기록 반환 여부

- 반환: 서울중앙지법 중 24개 재판부,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인천지법, 고양지원, 부천지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대구지법, 부산지법, 창원지법
- 미반환: 서울중앙지법(10단독), 서울동부지법, 의정부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춘천지법, 울산지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 ☞ 공판회부 시에는 더 많은 법원에서 수사기록을 반환하고 있음

### ▣ 반환 주체: 재판부

- 반환하는 법원의 반환 주체는 모두 약식계가 아니라 재판부

### ▣ 반환 시기

- 공판절차 회부 시: 서울중앙지법 중 3개 재판부, 서울서부지법 중 7개 재판부, 고양지원, 청주지법, 창원지법
- 재판부 기록 인수 후, 제1회 공판기일 전: 서울중앙지법 중 21개 재판부, 서울서부지법 중 4개 재판부,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부천지원, 대전지법, 대구지법, 부산지법

### ▣ 반환 방법

- 기록반환확인서 수령: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중 8개 재판부, 고양지원, 부천지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부산지법, 창원지법
- 기록반환철 장부에 사인: 대구지법
- 기타: 서울서부지법 중 3개 재판부



### ▣ 증거목록 작성 주체

- 수사기록을 반환하는 법원은 검찰로부터 증거목록을 전송받아 작성하고 있음

## 마. 수사기록반환 및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대한 참여관·실무관 의견

### ▣ 찬반 여부

- 찬성: 서울중앙지법 중 24개 재판부, 서울남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수원지법, 평택지원, 안산지원, 대구지법, 부산지법, 광주지법
- 반대: 서울중앙지법 6단독, 서울북부지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인천지법, 부천지원, 성남지원, 여주지원, 안양지원, 춘천지법, 대전지법, 청주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 ▣ 찬성한다면 적용대상 사건 범위

- 모든 사건: 서울중앙지법 중 22개 재판부, 서울남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중 4개 재판부, 평택지원, 대구지법, 광주지법
- 부인 사건: 서울중앙지법 중 2개 재판부, 서울서부지법 중 4개 재판부, 안산지원, 부산지법

### ▣ 반대하는 경우 구체적인 이유

서울중앙	기록 관리 어려움(6단독)
서울동부	약식사건의 경우 검찰과의 업무협조가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 집행과 외에는 따로 연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사건과와 검사실 등에 기록 관련하여 연락을 하는 경우에도 항상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약식명령에서 수사기록반환시 기록관리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북부	1. 수사기록을 반환하게 된다면 검찰에서 정식재판사건 중 인정사건의 증거목록을 만들어 제출(현재 정식재판 청구 사건의 증거목록은 검찰청에서 부인사건만 작성함)하여야 하는바 검찰청 입장에서 공판검사의 업무가 가중된다고 판단할 것이고, 또한 증거기록이 분리되어 검찰청으로 반환될 경우 검찰청으로 수사기록 열람·복사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져 검찰청 업무도 증대되므



	<p>로 이는 반드시 검찰청과의 업무협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이는 검찰청의 업무 비중뿐만 아니라 법원의 업무도 비중됨을 예상할 수 있음</p> <p>2. 약식단계에서는 수사기록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다 정식 재판 청구 혹은 공판절차 회부시 법원 약식계에서 수사기록을 분리하여 편철하는데, 분리하여 반환하다보면 잘못 편철되어 고정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에서 일일이 바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록을 반환하게 된다면 잘못 분리된 수사기록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업무가 발생되고 그와 같이 추가 반환해야 될 날개 문서가 법원과 검찰청을 오가면서 분실될 우려도 크다고 사료됨. 또한 분리 반환한다면 정식재판청구 사건도 굳이 '고정'사건으로 분류하지 말고 '고단'사건으로 처리함이 맞을 것임('고정'사건으로 분리하여 약식절차에서 간이하게 진행하였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공판절차와 유사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p> <p>3. 약식명령 사건이 정식재판절차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발한 벌금액보다 더 높은 벌금형을 판결하는 경우가 매우 극히 적어 사실상 약식절차와 다를 바 없음. 굳이 공소장일부주의를 정식재판에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p>
인천지법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분리하는 과정이나 검찰에 기록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기록 분실의 우려가 있음. 검찰에 기록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협조가 필요함.
성남지원	<p>1.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피고인들은 대부분 약식단계에서 검찰 수사기록까지 열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단계에서 분리하여 검찰로 반환하는 것은 피고인 열람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됨.</p> <p>2. 약식기록은 공소장과 수사기록이 보통 1책으로 같이 넘어오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고정전담재판부에서 공판기록과 수사기록을 분리하여 진행하는데, 만약 약식단계에서 반환해야 한다면 약식계의 업무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됨. 마찬가지로 고정전담재판부에서도 모든 고정사건을 분리하여 반환하고 그 반환된 것을 다시 받아야하는 등의 기록관리의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사료됨.</p> <p>3. 고정전담재판부에서는 고정 사건에 항소가 들어오면 검찰에서 증거목록을 받아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는 증거는 부분적으로 선별하여 검찰로 반환 처리하고 있고, 형사업무가 아직도 종이사건들이라 다른 타과에 비하여 업무량이 많고 기피하는 데 1심에서 항소가 들어오지 않은 일반 모든 사건들까지 수사기록 전체를 반환하고 다시 받는 일은 실무상 업무량이 크게 늘어 실무관들의 어려움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p>
춘천지법	기록 관리 어려움, 분실 우려, 민원 발생(피고인, 피해자 기록 열람 및 등본발급요구 등), 업무부담 가중
안양지원 대전지법	기록 관리 어려움, 기록 분실 우려, 업무부담 가중



청주지법	
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 ■ 참고: 2017년도 조사결과

- 조사 대상: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약식계
- 조사 결과

법원	재판부	의견	사유	비고
서울중앙	29단독1	반대	기록관리의 어려움	
	29단독2	반대	기록관리의 어려움	
	29단독3	반대	기록관리의 어려움	
	29단독4	반대	기록관리의 어려움	
서울동부	31단독	반대	업무부담 가중	시행시 부인사건
	32단독	반대	업무부담 가중	시행시 부인사건
인천	62단독	반대	업무부담 가중	
	63단독	반대	기록분실 우려	
	64단독	반대	기록분실 우려	
	65단독	반대	기록분실 우려	
	66단독	반대	기록분실 우려	
	67단독	반대	기록분실 우려	
	68단독	반대	기록분실 우려	
	69단독	반대	기록분실 우려	
수원	70단독	반대	기록분실 우려	
	71단독	반대	기록분실 우려	
수원	31단독	반대	업무부담 가중, 기록분실 우려	

- 2017년도 의견조회 결과보다 최근 의견조회 결과 찬성의 비율이 증가하였음

### 3. 접수건수 관련 통계

#### 가. 형사단독사건 및 고정사건

연도	형사단독사건		고정사건	
	접수 사건수	처리 사건수	접수 사건수(비율)	처리 사건수



2014	166,716	161,695	80,757(48.4%)	84,110
2015	167,917	165,792	71,977(42.8%)	72,532
2016	187,723	179,969	67,435(35.9%)	67,624
2017	183,195	185,034	59,886(32.6%)	61,707
2018	175,298	170,729	45,211(25.7%)	47,643
2019	184,557	175,800	44,332(24.0%)	41,974

※ 1. 비율 - 고정사건/형사단독사건  
2. 사법통계분석시스템(DW)을 통해 매년 1. 1.부터 12. 31.까지를 기준으로 통계 확인

#### 나. 정식재판청구 사건: 접수 건수 감소

-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식명령청구 사건의 접수건수 및 정식재판청구사건의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

연도	약식명령사건(전자약식 포함)		정식재판청구 사건수(비율)
	접수 사건수	처리 사건수	
2014	684,644	684,644	78,472 (11.5%)
2015	667,471	664,833	70,048 (10.5%)
2016	684,072	684,549	66,201 (9.7%)
2017	605,755	598,185	58,739 (9.8%)
2018	520,947	523,215	44,346 (8.5%)
2019	490,734	485,295	43,639 (8.9%)

※ 1. 비율 - 정식재판청구 사건수/약식명령사건 접수 사건수  
2. 2014년~2018년 사법연감 발췌(2019년 사법연감 P623, 약식명령사건 처리상황)  
3. 2019년 전산통계시스템 발췌(2020. 1. 21. 현재)

- 2018년 기준 정식재판청구 사건 수가 2014년도 대비 56%로 감소: 78,472건→44,346건
- 2017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변경 이후(2017. 12. 19. 시행)인 2018년에는 정식재판청구 사건수가 전년 대비 25% 감소, 정식재판청구 사건 비율도 전년 대비 1.3% 감소함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변경 이후 벌금액이 상향된 정식재판청구 사건은 7% 정도의 비율을 차지함



연도	접수 건수	처리 건수	벌금	벌금액 상향 건수
2018	45,212	47,644	33,555	2,453 (7.3%)
2019	44,350	41,974	29,015	2,193 (7.6%)

※ 1. 접수건수, 처리건수, 벌금은 사법연감 참조(2019년 사법연감 P940)  
2. 2019년 통계 및 벌금액 상향 건수는 전산통계시스템 추출(2020. 1. 22.)

#### 다. 공판회부 사건: 감소

-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공판회부된 사건수도 감소하는 추세

연도	약식명령사건(전자약식 포함)		공판회부 사건수(비율)
	접수 사건수	처리 사건수	
2014	684,644	684,644	20,468(3.0%)
2015	667,471	664,833	14,224(2.1%)
2016	684,072	684,549	10,980(1.6%)
2017	605,755	598,185	11,106(1.9%)
2018	520,947	523,215	10,074(1.9%)
2019	490,734	485,295	8,299(1.7%)

※ 1. 비율 - 공판회부 사건수/약식명령사건 접수 사건수  
2. 2014년~2018년 사법연감 발췌(2019년 사법연감 P623, 약식명령사건 처리상황)  
3. 2019년 전산통계시스템 발췌(2020. 1. 21. 현재)

- 2018년 기준 공판회부 된 사건수가 2014년 대비 49%로 감소: 20,468건→10,074건



##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논의경과]

### 1. 개요

#### 가. 회의 일시

- 오프라인 회의 : 2020. 1. 31.(금) 14:00 ~ 18:00
- 온라인 의견수렴 및 의결 : 2020. 2. 1. ~ 3. 26.

#### 나. 논의 사항

- 정식재판청구, 공판회부 사건에서 증거분리제출제도 시행 여부
- 구체적인 시행 방안
  - 반환 대상 수사기록의 범위
  - 수사기록반환의 주체
  - 수사기록반환의 시기
  - 제도 준비의 필요성
  - 예규의 개정
  - 시행 시기

### 2.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에서의 증거분리제출제도 시행 여부 ☞ 시행 의견(전원 일치)

#### 가. 시행 찬성 근거

- 공판중심주의 실현의 필요성
  - 기존 실무상 수사기록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증거분리제출제도를 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법정에서 심증을 형성하기보다 수사기록을 1회 기일 전에 미리 검토하여 심증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었음



- 이에 따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나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에 의하여도 심증이 형성될 여지가 있고, 인지보고서, 체포경위서, 수사보고서 등의 신빙성이 큰 의심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음
- 자백 사건의 경우, 공판검사가 수사기록을 미리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1회 기일에 변론이 종결됨으로써 법정에서의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 절차가 사실상 형해화
- 제도의 시행으로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에 대하여도 법관이 미리 소송기록을 읽고 피고인의 유죄에 대하여 예단을 가지는 것을 방지

#### ■ 현행법의 체계

- 정식재판청구사건에 대한 별도의 공판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님 ☞ 통상의 사건과 구별하여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에 대해서만 증거분리제출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법적 근거 부족
-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적용대상인 형사본안 사건의 1심과 그 상소심'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법에 근거를 둔 것은 아님

#### ■ 양형요소에 대한 충실한 심리 필요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수정 및 벌금형 집행유예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법관이 선택할 수 있는 양형의 범위가 넓어짐.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극단적인 양형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민들의 재판에 대한 불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양형 요소에 대한 충실한 심리 필요
- 자백 사건이 검사가 수사기록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1회 기일에 종결될 경우, 양형 요소에 대한 공방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됨. 사전에 수사기록을 반환하여 증거분리제출제도를 시행하면 양형이 쟁점인 사건에 대하여도 검사가 1회 공판기일 전에 증거를 검토하여 법정에서 양형



에 대한 실질적 공방을 피할 수 있음

■ 실현 가능한 여건의 조성

- 약식명령청구사건의 접수가 감소되면서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 역시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이 수정, 적용되면서 사건수가 더욱 감소하여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객관적 여건이 갖추어짐

나. 소결론

■ 제외할 법률상 근거가 없음

-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형사소송법 제450조, 제455조 제3항), 정식재판청구사건 및 공판회부사건에서 수사기록의 소재 및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 여부를 일반 공판절차와 달리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공판절차에서의 증거신청 및 증거의견 청취, 채택 및 조사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증거서류 등을 법원에서 보관하는 데 대한 근거 규정이 없음

■ 정책적 고려의 변경 필요성

-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을 증거분리제출제도 시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접수건수가 많음에도 이를 처리할 재판부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미한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정책적 고려의 결과임
- 그러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수정 등으로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접수가 감소하고 있어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통상적인 공판절차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줄어들었음

■ 공판중심주의의 보장

-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에서도 통상적인 공판절차와 같이 공소장일본



주의와 증거분리제출주의를 충실히 시행하여 공판중심주의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절차 정비 필요

- 수사기록의 반환 → 담당 직원들 사이의 인력 보충 및 적절한 업무 분장 필요
  - 증거분리제출을 시행할 경우 현재 약식계에서 재판부로 송부하고 있는 수사기록을 검찰청으로 반환하는 절차가 추가됨
  - 현황조사 결과에 의하면, 시행에 따라 기록 관리의 어려움, 분실 위험 등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바, 직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업무 분장 필요
- 사무분담 내지 배당에서의 고려
  - 기존 고정전담재판부는 제1회 공판기일 전 사건을 검토하여 정식재판청구의 이유가 상당하지 아니하거나 벌금액수의 조정만으로 종결할 수 있는 사건과 다투는 사건을 분리하고,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벌금을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사건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취하시키거나, 즉일선고를 위하여 양형준비를 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되어 왔음
  -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도 원칙적인 절차에 따라 증거조사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한바, 이를 위하여 고정전담/고단재판부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고정전담재판부를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증거조사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배당되는 사건수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제도 개선
  - 이와 더불어 실질적인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다른 부분에서 업무경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예,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의 도입 등)
  - 형사사건 전자화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



- 검찰과의 업무 협조
  -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검찰과의 업무 협조가 필요
  - 열람·등사 인원의 보충, 증거목록의 작성, 제출하지 아니하는 수사서류의 관리 등

### 3. 제도 시행의 구체적 방안

#### 가. 수사기록의 반환

##### ▣ 반환할 기록의 범위 ☞ 전체 사건을 대상으로

- 사건의 성격을 구별하는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어 실무상 용이함
  - 담당재판부에서 정식재판청구서 이유란의 내용을 살펴 자백 사건과 부인 사건을 구별할 경우, 재판부의 업무가 가중될 뿐만 아니라 그 구분이 명확한 것도 아님
- 자백 사건을 포함한 전체 사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공판중심주의 실현 기대
  -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에 대하여도 증거분리제출제도를 시행하는 이상 자백하는 사건을 시행 범위에서 제외시킬 수 없고, 그 수사기록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재판부에서 관리할 근거가 없음
- 통일적인 업무처리로 절차상 혼란 최소화
- 공판회부 사건의 경우
  - 공판회부 사건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법원에서 자백/부인 여부를 가리지 않고 검찰청에 기록을 반환하고 있음

#### 나. 반환의 주체 및 시기 ☞ 사건번호 부여 및 배당 후 약식계에서 반환

##### 1) 반환의 주체: 약식계



##### ▣ 약식계에서 '고정(정식재판청구)', '고단(공판회부)' 사건 번호를 부여하면서 기록을 제조, 분리한 뒤 공판기록은 배당된 재판부로, 수사기록은 검찰청으로 각 송부

- 약식계가 형사과에 소속되어 있는 법원인 경우 형사과에 마련되어 있는 수송달함에 각 사건의 수사기록을 넣어두면, 검찰 소속 사회복무요원이 이를 수거하여 검찰청으로 인계
- 약식계가 종합민원실에 소속되어 있는 법원인 경우 법원 소속 사회복무요원 등을 통해 검찰청으로 인계하여야 함. 추가적인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업무 교육이 필요

##### ▣ 근거

- 일괄적인 업무처리
  - 정식재판 청구 이유 불문하고 정식재판청구서가 접수된 모든 사건의 수사기록을 검찰청에 반환함
  - 전체 사건을 대상으로 수사기록의 반환을 실시한다면, 재판부에서 수사기록을 보관, 관리할 근거가 없으므로 재판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약식계에서 바로 반환하는 것이 간명함
  - 전국 법원에서 공통된 기준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할 필요
- 신속한 반환 가능
  -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가능한 신속하게 열람·복사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음. 법원에서 수사기록을 장기간 가지고 있을 경우 열람·복사 업무가 지연될 우려가 있음
  - 재판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괄 반환함으로써 신속한 처리가 가능

##### 2) 반환의 시기: 사건번호 부여 및 사건 배당 직후

-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에 대한 접수 업무 처리 및 기록 조제 직후



수사기록을 검찰청으로 반환

- 1회 기일 이전에 법관이 수사기록을 미리 검토하여 유죄의 예단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하지 않음.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에 대한 공판중심주의의 실질화에 더 기여할 수 있음
- 다만, 반환 시기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 약식계에서 정식재판청구서 인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담당재판부 기록을 송부하는 점에 비추어 정식재판청구 또는 공판회부 결정 이후 10일 이내에 약식계에서 해당 검찰청으로 수사기록을 반환하도록 함

#### 다.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제언

##### ▣ 공감대 형성 필요

- 전면 시행 이전, 증거분리제출제도의 확대가 형사재판에서의 공판중심주의의 충실한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점에 대한 설명 및 공감대 형성이 필요
- 이 과정에서 실무관 등의 증가되는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인력 배치, 업무절차 정비 등 사전 준비 가능
- 사전 준비를 통하여 업무상 혼란을 최소화하고, 열람·등사에 대하여 적절하고 통일적인 안내가 가능함

##### ▣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서의 고려

- 정식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증거분리제출제도가 시행될 경우 절차 진행에 있어서 일반 형사단독 사건과 차이가 없어지므로 고단/고정전담재판부를 구별할 실익이 없음
- 일반적으로 고정전담재판부는 통상의 고단재판부에 비하여 처리하는 사건의 수가 더 많음. 고정전담재판부는 제1회 공판기일 전 사건을 검토하여 정식재판청구의 이유가 상당하지 아니하거나 벌금액수의 조정만으로 종결할 수 있는 사건과 다투는 사건을 분리하고,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벌금을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사건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취하시키거나, 즉 일선고를 위하여 양형준비를 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되어 왔음

- 그러나 증거분리제출제도를 시행할 경우 이러한 절차 운영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음. 고정사건에 대한 접근을 달리하여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통하여 최초로 형사재판을 접하는 피고인이 많다는 점(일반적으로 사안이 경미하고 초범인 경우에 구약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등을 고려하여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도 원칙적인 절차에 따라 증거조사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
- 고정전담재판부를 둘 경우 전담재판부와 일반 형사단독 재판부 사이에서 사건부담의 균형이 맞지 않음
- ☞ 고단/고정전담재판부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고정전담재판부를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증거조사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배당되는 사건수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 절차 정비 필요

- 약식계에서 공판기록과 수사기록을 분리하여 별도의 절차에 따라 각각의 기록을 송부하여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인력배치, 통일된 업무 기준 마련 필요
  - 약식계에서 수사기록 반환을 담당하는 추가적인 인력 배치가 필요(약식계가 종합민원실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확정기록 송부의 예에 비추어 반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인력 및 공간 등의 확충 필요)
  - 수사기록 반환 사건의 목록 및 반환 확인서를 전산상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수사기록 송부일자가 재판사무시스템에 나타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수사기록 반환시 분실을 막기 위하여 기록반환 확인서(B1231)나 기록반환 철장부와 같은 통일적 재판양식 구비



-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이 접수되어 기일을 통지할 때에 피고인 등에게 열람·등사 절차에 관한 안내문 교부(정식재판 청구 이후 수사기록 열람·등사는 검찰청에서 실시한다는 내용)

#### ■ 검찰과의 협의

- 정식재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 공판기일 지정 이전 수사기록을 검찰이 모두 보관, 관리하게 됨
- 이에 따라 검찰청의 수사기록 관리의 부담과 수사기록의 열람·등사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증거목록의 작성: 증거목록은 법원/검찰간 전자적 유통문서의 대상. 제도를 시행할 경우 전체 정식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증거목록을 사전에 작성하여 전산 송부하여야 함
- 증거분리제출제도의 확대시행에 따라 공판검사가 수사기록 중 실제로 증거로 제출할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일반 형사사건의 통상적인 증거제출방식과 동일하게, 정식재판청구 사건 등에서도 처음부터 재판부에 수사기록 중 필요한 부분만을 증거로 신청하고 나머지 자료는 분리하여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참여사무관 등이 확인하여 반환조치 하여야 함

### 4. 관련 예규 개정

#### 가.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 1) 개정 필요성

- 현재 위 예규에서는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이후 공판기록과 수사기록을 분리한 후 공판기록을 담당 재판부에 송부한다(제9조 제4항, 제17조 제4항)'는 내용만 있을 뿐이므로, 수사기록반환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는 예규 개정이 필요

- 또한, 정식재판청구 사건도 일반 형사단독 사건과 동일하게 증거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정식재판청구 사건에 대한 특례를 둔 예규 제 13, 14조를 유지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

### 2) 개정안 취지

#### ■ 수사기록 반환

- 개관

종전	→	개정안
약식계에서 - 공판기록과 수사기록 분리 - 약식기록을 담당재판부로 송부		약식계에서 - 공판기록과 수사기록 분리 - 공판기록은 담당재판부로 송부 수사기록은 검찰청에 송부

- 구체적인 안<sup>6)</sup>

현행 예규	개정안
<b>정식재판청구 사건(제9조)</b>	
제9조(정식재판청구의 사유통지, 사건종결, 기록송부) ③ 기록조제는 종전 약식사건기록에서 약	제9조(정식재판청구의 사유통지, 사건종결, 기록송부) ③ 기록조제는 종전 약식사건기록에서 약

6) 구체적인 문구의 표현에 있어서는 다음 규정 등을 참조

-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6조(형사소송기록 등 송부) 형사사건 또는 치료감호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담당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사건기록과 재판서를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기록의 일부가 전자적 형태로 보관된 경우 이를 전송하거나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복제하여 송부한다.
- 형사소송규칙 제3조 등.  
병합심리, 이송을 위하여 기록을 송부할 때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규정
- 형사소송규칙 제170조(서류 등의 제출)  
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p>식사건기록표지와 약식공소장 및 그 이후의 서류를 분리하여 편철한 후 약식사건기록표지의 약식사건번호 및 해당란에 공판사건번호를 기재하고, 피고인 이름 및 또는 옆에 "정식재판청구"라고 주서한다. 구속에 관한 서류(피고인이 구속될 경우)는 약식공소장 바로 다음에 편철한다.</p> <p>④ 약식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정식재판청구서를 인계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송부서"를 첨부하여 약식기록을 담당재판부의 참여사무관 등에게 송부한다.</p>	<p>식사건기록표지와 약식공소장 및 그 이후의 서류를 분리하여 편철한 후 약식사건기록표지의 약식사건번호 및 해당란에 공판사건번호를 기재하고, 피고인 이름 및 또는 옆에 "정식재판청구"라고 주서한다. 구속에 관한 서류(피고인이 구속될 경우)는 약식공소장 바로 다음에 편철한다.</p> <p>④ 약식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정식재판청구서를 인계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항에 따라 분리, 편철한 기록은 "소송기록 송부서"를 첨부하여 담당재판부의 참여사무관 등에게, 증거서류 및 증거물은 검찰청에 각 송부한다.</p>
공판회부 사건(제17조)	
<p>제17조(약식절차의 종결과 기록송부) ④ 약식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약식사건이 공판절차에 회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송부서"를 첨부하여 약식기록을 공판사건 담당 접수계로 송부한다.</p> <p>제18조(접수절차) ① 공판사건 담당 접수계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소송기록과 증거물 송부서"의 좌측 하단에 접수인을 찍어 새로운 공판사건으로 접수하고 다른 공판사건과 함께 사건번호 부여, 배당, 전산입력 등의 절차를 밟는다. ② 공판사건 담당 접수계에서는 약식사건 기록표지의 약식사건번호 및 해당란에 공판사건번호를 기재한다.</p>	<p>제17조(약식절차의 종결과 기록송부) ③ 약식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약식사건이 공판절차에 회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 제3항에 따라 분리, 편철한 기록은 "소송기록 송부서"를 첨부하여 담당재판부의 공판사건 담당 접수계에, 증거서류 및 증거물은 검찰청에 각 송부한다.</p> <p>제18조(접수절차) ① 공판사건 담당 접수계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소송기록 송부서"의 좌측 하단에 접수인을 찍어 새로운 공판사건으로 접수하고 다른 공판사건과 함께 사건번호 부여, 배당, 전산입력 등의 절차를 밟는다.</p>

- 약식계에서 소송기록은 재판부(정식재판청구 사건) 또는 공판사건 담당 접수계(공판회부 사건)로 송부하고, 수사기록은 검찰청으로 바로 반환
- 제17조는 제정 당시부터 제3항이 없었으나, 이를 정비하여 제17조 제4항을 제17조 제3항으로 정정

#### ■ 절차 관련 특례 규정

#### ● 참여관에 의한 제1회 공판기일 전 판결초고 작성

-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라 수사기록을 검찰청에 반환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참여사무관 등이 판결초고를 작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수사기록이 재판부에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증거목록도 제1회 공판기일 직전에서만 송신될 것이기 때문
- 이에 따라 참여관의 판결초고 작성 업무를 유지할 것인지, 유지한다면 그 시기와 대상을 제도 변경에 맞추어 수정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

현행 예규	개정안 ①
<p>제13조 (참여사무관 등의 공판준비) ② 참여사무관 등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양형란을 공판으로 한 판결초고를 작성하여 소송기록과 함께 재판장에게 인계한다.</p>	<p>제13조 (참여사무관 등의 공판준비) ② 참여사무관 등은 <u>변론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양형란을 공판으로 한 판결초고를 작성하여 재판장에게 인계한다.</u></p>
	개정안 ② - 다수의견
	삭제

#### - 검토

- 위 조항은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4조에서 정한 즉일선고를 피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수사기록을 반환하는 이상 정식재판청구 사건 중 일부에 대하여 가급적 즉일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은 유지하기 어려움
- 즉일선고는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1항(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얼마든지 가능하고, 정식재판청구 사건이라고 하여 특례를 둘 필요는 없음
- 결국 참여사무관 등의 판결초고 작성은 제1회 공판기일 이후 판결초고를 작성하는 것을 전제로, 전체 사건을 대상으로 판결 초고를 작성하도록 하거나(개정안①), 즉일선고한 사건, 벌금액수만을 다루는 사건 등으



로 대상을 한정하여 시행하여야 함

-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통상적인 구공판 형사사건과 같이 절차를 진행한다는 원칙에서 위와 같은 특례를 둘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 규정을 삭제하는 것도 가능함(개정안②)
- 분과위원회 검토의결 결과 :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4명), 참여사무관의 재판참여 권한을 남겨둔다는 의미에서 변론종결된 전체 사건에 대하여 판결 초고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2명이었음

● 즉일선고 관련 특례 규정

- 수사기록을 일괄 반환할 경우, 정식재판청구의 이유가 상당하지 아니하거나 벌금액수의 조정만으로 종결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적절한 양형을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함
- 이에 따라 즉일선고를 권고하고 있는 예규 제14조를 수정할 필요
- 개정안

현행 예규	개정안
제14조 (즉일선고) 정식재판청구의 이유가 상당하지 아니하거나 벌금액수의 조정만으로 종결할 수 있는 사건은 될 수 있는 한 제1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고 이 경우 재판장은 판결초고의 주문란에 선고내용을 기입하여 법정에서 참여사무관 등에게 교부한다.	삭제

- 검토: 삭제 의견

- 즉일선고는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1항(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가능하고, 증거분리제출제도가 시행되는 이상 정식재판청구 사건이라고 하여 특례를 둘 필요는 없음
-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결초고를 작성할 수 없으므로 후단 부분도 삭제하여야 함



## 나.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

### 1) 개정 필요성

-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의 모든 수사기록이 반환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들을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음

### 2) 개정안 취지

- 종전: 형사본안 사건 중 정식재판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증거분리제출제도 미적용
- 개정안: 모든 형사본안 사건에 대하여 증거분리제출제도 적용

현행 예규	개정안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적용대상인 형사본안사건의 1심과 그 상소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사본안사건의 제1심과 그 상소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병합사건기록의 처리) ② 피고인에 대하여 병합된 여러 개의 형사본안사건 중 일부에 대하여 증거분리제출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제8조의 예에 의한다.	제5조(병합사건기록의 처리) ② 삭제
제8조(수사기록 일괄제출의 경우) ① 검사가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실시 대상이 아닌 형사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수사기록 이외의 증거서류등을 제출하는 경우 그 증거서류등에 대해서는 제4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수사기록 이외에 추가로 제출하는 증거서류등에 대해서만 제6조를 적용한다.	제8조(수사기록 일괄제출의 경우) 삭제

7) 자구 수정: '1심' → '제1심'



## 다. 참고 - 추가로 개정이 필요한 관련 자료

- **법원실무제요 형사II. 제5편 제1장 약식절차 부분**
- **공판절차 매뉴얼(2017. 2. 개정판) 중 해당 부분**

나. 1회 공판기일 진행 전 수사기록 검토 여부

1) 문제점

- 1회 공판기일 전에 수사기록 전부가 법원에 제출되어 있어 공판기일 진행 전에 수사기록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

2) 검토

-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벌금을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인 경우(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되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 등을 주장하는 경우도 포함): 1회 기일에 즉일선고를 할 가능성이 많고, 현실적으로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거쳐 즉일선고를 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므로, 미리 수사기록을 검토한 후 적절한 양형을 준비하는 것이 원활한 재판진행에 도움이 됨
-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인 경우: 원칙적으로 수사기록을 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나 그것이 정식재판청구이유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법리오해로 인한 부인이거나 범죄구성요건 이외의 사유에 관한 부인일 경우에는 미리 수사기록을 검토한 후 피고인에게 적절한 안내를 하는 것이 재판진행에 도움이 됨. 이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유죄의 예단을 보이지 않는 재판진행이 필수적임

## 5. 시행의 시기 및 범위

- **2020년 하반기에 일부 법원을 대상으로 시범시행 후 2021년부터 전국 법원 확대 시행**
- 원칙적으로는 재판제도와 관련한 부분이므로,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실시 시기를 정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
- 다만, 제반 여건의 마련 및 검찰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하여 일부 법원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를 고려할 수 있음
- 이는 2020. 2. 21.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의 아래와 같은 협의 내용을 반영한 것임
- ①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 전체를 대상으로 자백/부인사건을 가리지 않고 수사기록을 반환한 후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증거조사를 진행함.



다만, 구공판 사건에 대하여도 교통사고, 음주무면허운전, 폭력사건으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자백한 경우에는 수사기록을 일괄제출하고 있으므로,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자백한 사건의 경우에는 이와 동일하게 처리 가능함

- ②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20년 하반기 일부 법원 시범시행 후 그 성과를 분석·평가하여 2021년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시행을 검토함
- **전국 법원 확대 시행 시기에 맞추어 관련 예규를 개정, 시행**



별지

▣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제266조(공소장부분의 송달)**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분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3장 약식절차**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에는 추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451조(약식명령의 방식)**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52조(약식명령의 고지)**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 ②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54조(정식재판청구의 취하)**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제455조(기각의 결정)**

- ①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456조(약식명령의 실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57조의2(형중 상항의 금지 등)**

-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458조(준용규정)**

- ① 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5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취하에 준용한다.
- ② 제36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형사소송규칙』

**제2장 약식절차**

**제170조(서류 등의 제출)**

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1조(약식명령의 시기)**

약식명령은 그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172조(보통의 심판)**

- ① 법원사무관등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사건을 법 제450조의 규정에 따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검사는 5일 이내에 피고인수에 상응한 공소장 부분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제2항의 공소장 부분에 관하여 법 제266조에 규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3조(준용규정)**

제153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청구의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